



본란의 기사는 本會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 (TEL : 553-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執委, 일부 日本 電子製品에 대한 輸入 監視制 계속 시행

執行委는 日本產 퍼스널 컴퓨터와 電子 압축공기 Drill에 대한 임시 소급 감시제를 연장 적용키로 결정. 同件에 대한 EC의 監視制는 美國이 日本產 퍼스널 컴퓨터와 電氣 工具 및 CTV에 100%의 關稅를 부과키로 결정한데 이어 1987년 5月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그때 까지 美國의 조치로 인해 日本의 對EC 輸出이 증가되어 EC內 가격수준 및 生産業體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왔었음.

이번 監視制가 연장 적용되는 품목의 稅番은 다음과 같다.

퍼스널 컴퓨터 :

CN Code	8471 2040	8471 2050
	8471 2060	8471 2090

전자압축공기 Drill : CN Code 8508 1091

적 용 기 간 : 1989年 12月 31日限

2. 브뤼셀 EC 通商法 會議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EC 通商法 會議에서 EC 執行委의 反dumping 부서장인 Mr. Beseler와 그 보좌관인 Mr. Stewart는 執行委 反dumping 정책의 제반 현황에 대하여 연설.

Mr. Stewart는 Screwdriver Rule에 대한 EC 政策의 제반문제에 대해 연설. 그는 EC 조립품에 대한 反dumping 關稅 적용前提條件들에 대해 토의.

현재 EC 反dumping法에 規定되어 있는 조건은 4 가지로서,

첫째, 동일한 원제품에 反dumping 關稅가 부과되고 있으며

둘째, 組立活動이 輸出業體와 관련된 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셋째, 反dumping 調査 개시후 組立活動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生產量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넷째, 組立製品 구성 부품의 최소 60%(가격기준)가 dump 판정을 받은 원제품의 輸出國 部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Mr. Beseler는 최근 dump 케이스 進展狀況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자타자기 케이스에서 EC司法 재판소가 執行委의 방법론과 접근방식을 지지하였다는 點 강조. 또한 그는 최근 反dumping 担當人員이 빠른 속도로 증원되고 있으며 조만간 dump 調査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

Uruguay GATT Round와 관련, EC는 他國家들이 自國의 反dumping 法에 Public Interest Test, 被害基準 및 Sunset 규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EC 反dumping 法規上에는 이미 이러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그는 EC는 dump 提訴와豫備 關稅賦課決定까지의 기간이 길었을 경우 EC 產業에 대한 補償策의 일환으로서 소급판세適用與否 문제 토의 희망. 그에 따르면 EC는 절차의 신속화와 現地 產業에 대한 補償策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3. EC - 日本 合作

伊의 Olivetti 社와 日本의 산요, 미쓰이는 伊에 1991年부터 年產 20萬臺의 팩시밀리 機械를 生產하는 合作

會社를 세우기로 發表.

生産後 同製品은 3社가 각자의 商標로서 판매 예정. 前에는 Olivetti가 다른 日本會社로부터 구입하여 自社 商標로 판매해 왔음.

과거 수년간 팩시밀리가 反덤핑 調査 對象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왔음.

西獨의 Siemens와 日本의 마쓰시타는 수동부품(레지스터, 다이오드, 벨브 등) 製造販賣를 위한 合作會社 설립을 위해 協議中에 있다고 발표.

마쓰시타가 궁극적으로 Siemens로부터 수동부품 生産施設을 인수할 가능성도 모색된 것 같음.

4. 日本의 TDK, Sony 對 EC 投資計劃 發표

TDK는 럭셈브르크에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生產工場 設立計劃 發표. 生產 개시는 '90年末로 예상되고 있는데 同社는 오디오 테이프 700만개, 비디오 테이프 400만개를 生產하여 他EC國에 輸出하기를 회망. 同社는 럭셈브르크 政府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게 됨.

3月 伊에 4,800만개의 카세트 테이프 生產工場 설립계획을 발표했던 Sony 社는 伊 市場에 32Bit Workstation을 판매할 自會社 設立計劃을 최근 발표.

日本의 오디오·비디오 테이프는 反덤핑 調査에서 제외되어 있어 兩社의 EC 投資는 단지 덤프 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임.

5. VCR Tape 確定關稅 賦課 결정, EC 관보에 게재

EC 관보에 韓國 및 홍콩業體에 대한 VCR Tape 反덤핑 關稅 發표됨. 反덤핑 關稅는 1.9%~21.9% 이지만 韓國產 製品에 賦課되는 최고율은 3.8%임. Reel Type의 덤프마진은 1.0~1.4%로 나타났으나 덤프마진율이 1.5% 이하이면 반덤핑 관세 부과되지 않음.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89. 6. 22 VCR Tape 확정 反덤핑 판정 관보 게재(OJ L174)

○ Tape 종류 : VHS Cassette

○ C.N. Code : 8523 1300(6.5mm 초과)

홍콩의 Swillynn 社와 Wing Shing Cassette 社에는 關稅賦課되지 않음. Swillynn 社의 경우 덤프마진이 매

〈Cassette〉

國家	業體	豫備判定	確定判定	確定dump 마진율	差
韓國	금성사	10.8	2.9	2.97	-7.9
	세한	4.5	1.9	1.96	-2.6
	코오롱	7.6	2.0	2.03	-5.6
	SKC 및 其他	6.6	3.8	3.81	-2.8
홍콩	Magnetic Enterprise	20.5	15.8	15.82	-4.7
	Swire Mgnetics Ltd.	11.3	4.9	4.96	-6.4
	ACME	59.3	9.3	9.34	-50
	Casin Ltd.	59.3	9.3	9.34	-50
	Yee Keung Ind. Co. Ltd.	59.3	9.3	9.34	-50
	Swillynn Ltd.	8.1	A/D종결 Under-taking	0.02 9.34	- -
	Wing Shing	59.3	21.9	21.99	-37.4
	Hanny Magnetics				

〈Reel〉

國家	業體	豫備判定	確定判定	確定dump 마진율	差
韓國	세한	1	0	1.06	-1
	SKC	5.5	0	1.40	-5.5

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Wing Shing의 경우는 執行委가 Price Undertaking을 수락.

홍콩 業體에 부과된 확정관세는 5~21.9%로서 韓國業體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豫備關稅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낮아진 것임.

또한 執行委는 한 Wing Shing 社의 價格引上 제안을 수락하였는데 同一國의 反덤핑 관세부과 대상업체 중 한 업체만이 제출한 가격인상 제안을 수락하는 것은 드문 경우임.

그러나 이와같이 確定 dump 關稅率이豫備判定時 보다 큰폭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政府는 홍콩 업체에 賦課된 덤프 關稅率에 불만족. 政府는 홍콩의 市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輸出業體들이 덤프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C가 홍콩을 샘플 케이스로 삼아 공정하지 못한 취급을 해왔다고 느끼고 있음. 홍콩 政府는 本措置에 대한 Review를 통해 정정을 요구하기로 결정.

6. Car Radio 증거 불충분

유럽 Car Radio 製造業體들에 의해 韓國 및 기타 아시아 輸出品에 대해 제기된 제소는 反덤핑 조사를 개시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정. 제소를 검토한 후 執行委는 유럽 產業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믿어짐. 그러나 EC 業體들은 증거를 보완하여 다시 제소를 할 것이며 따라서 제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그러나 설사 제소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아직 調査 개시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時點이 調査對象 期間에 포함될 가능성 이 높음. 따라서 이 時點에서의 자율적인 輸出價格 引上은 執行委로 하여금 한층 덤핑 마진율을 성립시키기 힘들게 만들 수 있음.

7. VCR Undertaking 再考

執行委는 VCR Undertaking 價格 再調整을 위한 輸出業體와의 協商 개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執行委는 Price Undertaking의 효과가 이제야 市場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감안하여 價格水準을 검토하기 이전에 Undertaking의 영향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執行委는 최소한 Christmas 판매 시즌이 끝날때 까지는 Undertaking 價格 再考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8. 유럽 司法部 日 Nakajima 社의 反덤핑 關稅 부과 정지 요청 기각

Nakajima 社의 對EC Dot Matrix Printers 輸出에 關稅되고 있는 反덤핑 關稅의 부과 정지 신청이 기각됨.

Nakajima 社는 1988年 11月 理事會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反덤핑 關稅를 同措置에 대한 제소중에는 정지해 줄 것을 유럽 司法部에 요청. 同정지 要請은 受注量의 25% 감소와 3個 會員國에서의 市場占有 rate 감에 따라 제기. 그러한 경우 임시조치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제소자는 關稅 關稅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심각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 司法部는 이러한 조건들이 關稅 關稅 정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

9. 日 半導體 칩에 대한 反덤핑 調査 조만간 종결 예정

EC 執行委와 日本 半導體 製造業體들間에 1987年 4月 (EPROM) 과 1987年 7月 (DRAM) 부터 시작된 日本 半導體 EC 輸出品에 대한 反덤핑 措置 종결을 위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同件 關聯, 日本業體들은 VCR 및 컴퓨터, 其他 電子裝備에 들어가는 DRAM과 EPROM에 대해 가격인상을 제의한 것으로 믿어짐.

또한 日本은 Chip에 대한 輸入規制 및 特定 輸出業體에 의한 輸出價格 또는 물량 통제 행위를 삼가키로 하는데 합의. 이러한 합의는 GATT 理事會 規定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GATT 理事會는 美·日 半導體 협약과 특히 第3國 半導體 판매에 미치는 同協約의 영향에 대해 비난하여 왔음.

10. 덤핑 규정 통일에 대한 GATT 會議

美國, EC 및 GATT 관리들은 反덤핑 및 相計關稅賦課의 통일(Harmonization)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 非公식 會談 개시.

美國은 保護主義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규정들을 수정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음. GATT 관리들은 궁극적으로 통일적이며 명료한 규정을 포함하는 체계가 모든 GATT 會員國에 의해 채택되기를 희망.

11. 執行委, 마이크로 칩 研究 財政支援

執行委는 JESSI (Joint European Sub-Micron Silicon Initiative)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의 1/4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40억불 중 나머지는 各會員國(總10億弗)과 參加業體(20億弗)가 조달. 同研究 프로그램은 다음 3 가지 분야를 포함함.

- 메모리 및 로직 디바이스 尖端技術 개발을 위한 합동연구
- 半導體 生產에 관련된 生產裝備 및 素材에 대한 연구개발
- 尖端 서킷 디자인에 필요한 新 CAD 裝備 개발 및 표준화 협력사업

현재 美國 政府가 지원하는 半導體 研究를 위한 Sematech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Initiative) 와 필립스 및 시멘스를 포함한 몇몇 主要 유럽 업체들間에 美·EC間 칩 研究 프로그램의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양측 공동 관심분야 모색을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됨. 同會談 的제중에는 半導體 生產裝備를 위한 공동 Interface 표준 규격 채택과 자동화를 위한 공동 Software 標準 規格 채택 가능성 여부도 토의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Sematech는 同研究 프로그램에 美國外 業體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여 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Sematech와 EC 業體들間의 협력이 이루어질지는 분명하지 않음.

12. EC의 經濟 通貨 同盟을 위한 1段階 措置

EC 12個國 정상간의 會議에 이어 EC는 經濟·通貨同盟(EMU)의 실현을 위한 1段階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

同決定은 EMU 설립을 위해서 EC가 취해야 할 3段階의 조치를 명시한 최근의 報告(Delors Plan)에 기초하여 취해졌는데, 同決定의 결과로서 各會員國間 通貨와 經濟政策의 보다 광범위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會員國中 9個國 通貨가 가입되어 있는 유럽 通貨體系(EMS)에 모든 會員國이 加入할 것으로 예상됨. EMU의 최종 목적은 汎유럽 經濟·通貨政策의 채택과 단일 유럽 通貨의 創出임.

그러나 비록 會員國들이 同計劃의 1段階를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 1段階가 완료되기 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Delors Plan의 第2, 3段階 計劃着手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3. 理事會, 마이크로 電子分野에 6個月 關稅猶豫 연장 발표

理事會은 마이크로 電子分野의 일부 工產品에 적용되고 있는 關稅猶豫措置 延長 발표. 이 조치는 EC 產業이 EC 소비자(産業)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데서 취해짐. 同猶豫措置는 1989年 7月 1日부터 12月 31일까지 유효.

14. 오스트리아 EC 加入 申請

오스트리아는 7月初 정식으로 EC 加入을 신청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가입 신청은 일정기간 동안은 EC 會員國에 의해 고려되지 않을 전망. 최소한 EC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한 1992年 프로그램 완료 시까지는 어떠한 가입 신청도 고려되지 않을 것임.

15. EC 반덤핑 법규 최근 진전 사항

LWD 辯護士, 6月 1日 Rrussel에서 열린 EC 通商法 關聯 강연회 참석 결과 보고

○연사; Dr. H. Beseler (반덤핑부서 책임자)

Mr. Alistair Stewart (반덤핑부서 부책임자)

○내용 요약;

- Screwdriver Rules (현지 조립공장 관련 규정)

완제품에 대한 확정 '덤핑' 판세가 현지 조립제품에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a) 완제품에 확정 반덤핑 판세가 既부과되고

b) EC내 조립활동이 동 완제품의 수출업체와 연관된 (Associated or Related) 회사에 의해 행해지며

c) 반덤핑 조사 개시후 EC 내 조립생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d) 조립품에 사용된 부품의 최소한 60% (가격 기준)가 덤플링제품이 수출된 국가를 원산지로 할 때임.

- d) 60% 기준과 관련, 집행위는 소위 分자이론 (Molecular Theory)를 적용하고 있음. 이 이론은 어떠한 종류의 반조립품 (Sub-Assembly) 또는 Single Part로 인정될 수 있는 부품도 그 최소 구성단위까지 분리하여 Local Content Test를 받는다는 이론임.

즉, 반조립품은 원산지를 하나로 하는 (On Origin) Single Part가 아니라 상이한 원산지의 Separate Parts로 취급 가능하다는 것임. 단 그 최소 구성단위까지 분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경우 그 효용성을 파괴하는 경우임. (Destruction Test)

- c) 조립생산의 「대폭」 증가 (Substantial Increase-

se)」의 판단기준 관련,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전년도에 비해 약 24%의 생산 증가를 「대폭 증가」로 인정하나 정해진 최소 수치는 아니며 집행위는 Case 별로 과거 생산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함.

- b) 현지 조립업체가 非EC 수출업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 집행위는 법인 조직상 연관관계(Corporate Link) 여부뿐 아니라 조립공정에 대한 관여 정도도 고려함. 따라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EC 회사도(하청회사) 만일 수출업체가 EC내 생산공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연관(Associated or Related) 된 것으로 인정.

- 현지 공장 反덤핑 조사 절차시 Undertaking 수락과 관련, 집행위는 설사 조사 종결후라 할지라도 Undertaking을 받아들일 수 있음. 현지 조립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을 경우 현지 조립업체가 관세부과 요건이 더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동업체는 반덤핑 관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집행위는 현지 조립업체의 Undertaking 수락을 결정하는 날부터 관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방

안을 고려하고 있음. (현재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집행위 제안을 채택할 때까지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집행위 결정 및 제안시점과 이사회 채택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 차가 있음)

- 집행위가 현지 조립공장에 대한 Undertaking을 수락할 때 덤프 재판 제품 수출국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면 EC Part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조건은 없으나 EC Local Content 비율이 아주 낮을 경우 Undertaking 수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최근 2년 동안 반덤핑 담당 집행위 직원이 30명에서 90명으로 늘었으며 향후 반덤핑 조사속도가 빨라질 것임.

○ OEC는 Uruguay GATT Round에서 새로운 이슈 집중토의 제의. EC는 현재 다른 국가들도 Public Interest, Injury 기준, Sunset Procedure를 각국 반덤핑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임.

○ OEC는 또한 소급관세와 관련 덤프 제소, 조사개시, 잠정관세 부과까지의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EC 산업의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 강구.

